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1.

발 의 자 : 이재정 · 박홍배 · 박정현
윤준병 · 김태년 · 김한규
임호선 · 허성무 · 백혜련
문정복 · 민홍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.

그런데,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·노인 등으로 한정하여,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·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,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제1항)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제1항 중 “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”을 “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”으로, “취할 수 있다”를 “취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<u>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</u> (이하 “감염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·방역 물품(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)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<u>취할 수 있다.</u>	제49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어린이, 노인, 장애인</u> <u>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하</u> <u>여야 한다.</u>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